

제주지방법원 2024. 5. 30 선고 2023가합11558 판결 [연대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민

담당변호사 김선우, 이용준

피 고 영어조합법인 B

변 론 종 결 2024. 4. 18.

판 결 선 고 2024. 5. 30.

주 문

- 피고는 C[주소: 제주시 D]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8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4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원고가 2022. 6. 22. C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22드단12312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, C은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22드단13216호로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, 위 사건에서 2022. 11. 24. 원고와 C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(이하, '이 사건 조정조서'라 한다). 이 사건 조정조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2. 원고와 C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나. C은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, 16억 8,500만 원을 지급하되, 그중 9억 원은 2022. 11월 중 E은행 대출실행과 동시에, 4억 원은 2023. 3. 31.에, 나머지 3억 8,500만 원은 2023. 10. 31.에 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모두 지급한다. 단, C이 위 각 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그 즉시 미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, C은 그에 따른 위약별로 미지급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및 그에 대한 연 15%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.

3. 법인 주식 및 법인 경영권의 양도와 관련한 세부 합의사항

마. 원고는 이 사건 조정 성립 이후 C이 독자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이행한다.

3) 원고는 이 사건 조정 후 7일 이내에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한다.

4) 위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주식을 C에게 양도함을 승인하고, 대표이사를 C으로 변경하며, C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 제2의 나.항 기재 재산분할금 및 위약벌에 대한 피고 법인의 연대보증을 승인한다.

5) (생략)

바. C은 아래의 사항을 이행한다.

1) C은 위 제2의 나.항 기재 재산분할금 중 1차적으로 지급하는 9억 원을 뺀 나머지 7억

8,5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C이 원고로부터 이전받는 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F 대1,113㎡”에 관하여 E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에 이은 후순위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설정해 준다.

2) 위 임시총회에서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원고에서 C으로 변경되면, C은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제2의 나.항 기재 재산분할금 및 위약벌에 대한 연대보증서를 작성·인증받아 원고에게 교부하고, 위 재산분할금 원금 잔액 7억 8,5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법인 소유의 공장에도 E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에 이은 후순위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설정해 준다.

나. C은 2022. 12. 29.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 제2의 나.항에서 정한 재산분할금 중 9억 원을 지급하였다.

다. 피고는 2022. 12. 30. 원고에게,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정조서 제2의 나.항에 따른 재산분할금 채무 중 C이 원고에게 2023. 3. 31.까지 지급하기로 한 4억 원 및 2023. 10. 31.까지 지급하기로 한 3억 8,500만 원의 합계 7억 8,500만 원(= 4억 원 + 3억 8,500만 원)의 채무(이하, ‘이 사건 재산분할금 채무’라 한다)와 C의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한 위약벌 및 지연손해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라. C은 이 사건 재산분할금 채무 중 2023. 3. 31.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주채무자인 C이 이 사건 재산분할금 채무 중 2023. 3. 31.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4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, C은 이 사건 조정조서 제2의 나.항에 따라 위 2023. 3. 31. 이 사건 재산분할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. 따라서, C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 제2의 나.항에 따라 이 사건 재산분할금 채무와 위약벌 합계 15억 7,000만 원[= (2023. 3. 31.까지 지급하기로 한 4억 원 + 2023. 10. 31.까지 지급하기로 한 3억 8,500만 원) × 2] 및 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인 2023. 4. 1.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

채무를 부담한다.

그렇다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15억 7,000만 원 중 원고가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구하고 있는 7억 8,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2023. 4. 1.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기한 유예 합의 항변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원고와 C이 이 사건 재산분할금 채무 중 2023. 3. 31.까지 지급하기로 한 4억 원의 지급 기일을 2023. 10. 31.까지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고, 이에 따라 C 소유의 제주시 F 대 1,113㎡ 및 위 토지 지상의 피고 소유의 건물(이하,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각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, C이 2023. 3. 31.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.

살피건대, 앞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C과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23. 1. 13. 접수 제3395호로 채무자 C, 채권액 7억 8,500만 원, 변제기 2023. 10. 31., 이자 없음으로 된 2023. 1. 12.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각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인정된다.

그러나 위 각 저당권설정등기는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C이 이 사건 조정조서 제3의 바.

1)항 및 2)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.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C이 이 사건 재산분할금 채무 중 4억 원의 지급 기일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나. 권리남용 항변에 관한 판단

1) 피고는, ① 원고는 주채무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재산분할금 채무, 위약벌 및 지연손해금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고, ② 한편 원고의 신청으로 제주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데, 이

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원고의 청구액을 초과하여 원고로서는 위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채권 전부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,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연대보증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.

2)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,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,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,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고,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(대법원 2003. 2. 14. 선고 2002다62319, 62326 판결 등 참조).

3) 앞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제주지방법원 G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은 인정된다.

그러나,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2,359,607,760원으로 감정평가되었으나, 위 경매사건의 제1회 경매기일에서 유찰되어 2차 경매기일에서는 최저 경매가가 1,651,725,000원으로 하락한 사실,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주지방법원 2022. 12. 29. 접수 제99917호로 마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, 채무자 피고, 채권최고액 17억 4,000만 원으로 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, ③ 위 법원이 2024. 1. 31.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최저매각가격 1,651,725,000원으로는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1,745,705,910원(근저당권, 조세 및 절차비용)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들이 인정된다.

4)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, 즉 ① 원고로서는 위 경매절차에서 C 및 피고에 대한 채권 전부의 만족을 얻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고, 피고에 대한 권리행사가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, ② 객관적으로도 원고의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, ③ 원고는 주채무자인 C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중

누구에게라도 위 각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,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는 최고·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(민법 제437조 단서 참조) 등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금 지급청구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4. 소결론

따라서,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78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4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5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노현미, 판사 박진희, 판사 고은솔